

2022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 결과보고

I 근거 및 개요

□ 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19조
- 2022년도 연간 자체감사계획 : 기획예산담당관-218(2022. 1. 5.)호

□ 감사개요

- 기간 : 2022. 5. 16. ~ 5. 27. (10일간)
- 대상 : 본청 전 부서
- 감사범위 : 2021. 10. 1. ~ 2022. 3. 31. 일상경비 등 기초회계 분야
-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 중점 감사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규정 준수 여부
 - 신용카드 사용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 여비 집행 적정 여부 등

II 감사결과

(단위 : 건/천원/명)

연번	제 목	행 정 상			재 정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정	기타
계		12	5	-	-	530	410	-
1	관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9				530		
2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관한 사항	3					410	
3	지방자치단체 카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4	계약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2					



Ⅲ 지적사항 조치

□ 관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9개 부서)>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등 9개 부서에서는 관내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53건) 대상자에게 각 1만원씩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과다 지급한 관내 여비 530,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조치

□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관한 사항 <시정(3개 부서)>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6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고, 공사도급·용역계약의 매입액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 청구액의 1.5/100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과는 2022년 ♣♣♣♣♣♣ 용역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액의 2.5%의 지역개발공채를 미 매입(1건/65,000원),
○○○○과는 2022년 ●●●●●● 용역 등 3건을 계약하면서 지역개발공채 미 매입(3건/310,000원),
◇◇◇◇과는 ◆◆◆◆◆ 용역을 계약 하면서 지역개발공채 미 매입(1건/35,000원)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미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410,000원을 추징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토록 조치

□ 지방자치단체 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주의(3개 부서)>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별표 5(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직접 세입조치토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 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 그럼에도 **◆◆◆◆과**는 카드결제 영수증(6건)에 기재된 실명과 지방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입력한 사용자가 달라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21. 12. 신용카드 계좌에 발생한 예금이자(2건 970원)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 ■ ■ 과**는 인사발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 관리대장에 보관 책임자 변경을 하지 않았고, '22년 2~3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급식비 결제 시 현금영수증(현금지출증빙)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과**는 '21. 10~12월 중 6건의 급식비 결제 시 현금영수증(현금지출증빙)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계약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주의(2개 부서)>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 이행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 하여 5일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과는 '22년 ▧▧▧▧▧▧ 임차 용역 계약 등 4건, ◇◇◇◇과는 '22년 ◆◆◆◆◆ 임차 용역 계약 등 4건 집행 시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